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국제 비교 및 영향 분석

Comparison and Impact Analysis of Pensio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류건식*

Ryu Keon-Shik

이봉주**

Lee Bong-Joo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 회계기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가운데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고찰한 후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K-GAAP), 국제회계기준(IAS), 미국 연금회계기준(SFAS)상의 퇴직연금 회계기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연금부채의 할인율 적용 등에서 미국 기준과 국제회계기준 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상승률 및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연금부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 할인율 적용문제와 더불어 연금부채를 감안한 연금자산의 배분전략 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고려하여 향후 총량 규제중심의 재무건전성 규제로의 전환, 연금 ALM 중심의 리스크감독, 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및 확인 관련 규정 정비, 연금부채의 산출기준 적용, 퇴직연금회계 관련 규정과의 역할 정립 등과 관련된 정책 조치들이 요구된다.

국문 색인어: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퇴직연금, 퇴직연금 회계기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학술진흥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051602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keon@kiri.or.kr)

**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bjlee@khu.ac.kr)

논문 투고일: 2008. 11. 20, 논문 최종 수정일: 2009. 01. 16, 논문 게재 확정일: 2009. 03. 27

I. 서론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에 준하는 회계기준(이하,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비상장 금융회사 포함)는 늦어도 2011년부터 자사의 재무제표를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¹⁾. 특히 2011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재무제표를 비교 공시하여야 하므로, 2011년에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예정인 기업도 2010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감독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좋은 예로 장기간 퇴직연금제도를 구축해온 영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회계기준(FRS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7)을 2003년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fair value)를 평가한 결과, 많은 기업의 퇴직연금제도가 과소 적립된 상태임이 밝혀졌고, 이는 해당 기업의 신인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유사한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구(즉, Pension Protection Fund)를 설립하는 배경이 되었다²⁾.

한편 Amir et al(2007)은 실증 분석을 통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연금제도 자산배분전략에 있어 주식 비중은 감소하고 채권 비중은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Blome(2007)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시행은 할인율과 적립 방식의 표준화로 연금제도의 부채 규모를 증대시키고,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한다.

- 1)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1단계 도입(2009년)과 2단계 도입(2011년)으로 이루어지며, 제1단계 도입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선 적용 희망기업(금융/보험사는 선 적용 불가)인 반면, 제2단계 도입에서는 모든 상장회사 및 보험회사 등 금융/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 2) 이봉주(2007). 예컨대 영국의 연금감독청은 2004년 말 현재 FRS 17 기준에 의해 FTSE350 기업들의 적립 부족액을 1,300억 파운드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당시 영국 GDP의 11%에 달하는 것이었다(p.90).

따라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퇴직연금 회계 처리에 많은 변화를 야기함은 물론 향후 퇴직연금 운용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관련 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제회계기준 상의 퇴직연금 회계기준 및 규정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반영하여 퇴직연금 회계기준 도입 시의 영향과 정책적 개선 과제를 제시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에 국한하여 국제적 비교를 한 가운데, 이를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영향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시사점을 모색하고, 정책적 개선과제(퇴직연금감독 기준 측면, 법인세법 등 퇴직연금 회계규정 측면 등)를 제시하고자 한다.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을 제시한 선행 연구로는 김해식(1999), 성주호(2007), 이봉주(2007),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2007), 류건식·이경희(2008)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김해식은 퇴직연금 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영국 등과 비교하고,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성주호는 적립방식인 예측급여 단위적증방식, 가입연령방식 등의 연금재정방식을 통해 연금 적립위험의 최적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봉주는 영국과 미국에서의 최근 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 추이와 그 파장을 논의하면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전략이 국제회계기준과 적지 않게 연계됨을 사례로 제시한다. 또한 류건식·이경희는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배분전략도 차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부채구조의 변동에 따른 자산배분비중을 시나리오에 의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정의 상 연금제도의 자산과 부채가 일치하며, 따라서 자산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는 한 DC형 퇴직연금의 회계 처리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Baker et al, 2005, p.113). 그러나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양한 회계기준의 존재가 의미하듯 복잡다기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제 II 장에서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Korea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GAAP)³⁾, 그리고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미국 연금회계 기준(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FAS) 등을 퇴직연금 회계기준 및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⁴⁾. 제Ⅲ장에서는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⁵⁾을 반영할 경우 연금부채의 규모 및 변동성 등이 어느 정도 인지를 시나리오 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시나리오 II (평균임금비례방식)에 의해 추정하였다. 특히 제Ⅳ장에서는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개선할 제도적, 정책적 과제로서 총량규제중심의 건전성 규제로의 전환, 연금 리스크 감독의 정비, 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 연금부채의 산출 기준 적용, 퇴직연금회계 관련 규정과의 역할 정립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3)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은 본격적으로 2011년도에 적용(시행예정)되기 때문에, 현시점의 퇴직연금 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연금 회계기준(회계기준적용의견서 2005-2)도 포함하여 특징을 비교하였다.

4) 물론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거의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양(兩) 회계기준 간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치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미국 연금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상의 퇴직연금회계기준과 비교할 때 적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국 및 일본 등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거의 원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5) 국제회계기준(IAS 및 K-IFRS) 상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관련 회계기준 부문만을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으로 정의하여 살펴본다.

Ⅱ. 퇴직연금 회계기준 및 규정의 국제 비교⁶⁾

1. 퇴직급여채무의 측정

국제회계기준(IAS 19)은 발생주의적 관점에서 예측급여 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PUC)을 연금부채 평가방식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⁷⁾. 재무재표 상 퇴직연금부채는 부채의 현재가치에서 자산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후, 미인식된 과거근무채무 및 계리적 손익의 차이를 반영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SFAS에서는 근무원가의 측정을 위해 예측급여채무(PBO)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보완적으로 최소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PBO⁸⁾ 대신 누적급여채무(ABO)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절충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연금자산의 공정가치가 ABO보다 작을 경우에는 미적립 ABO 만큼은 추가최소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부채 인식과 측정 시에만 ABO가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6) 제Ⅱ장의 주요 목적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연금 회계기준 및 규정을 기능적으로 분류하고 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퇴직연금회계 관련 기준 및 규정 보완 등에 기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퇴직연금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간의 규정을 기능별로 상호 비교 분석하여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의 퇴직연금회계 기준 및 규정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7) 연금부채(채무) 종류에는 가득급여채무(Vested Benefit Obligation, VBO), 누적급여채무(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ABO), 예측급여채무(Projected Benefit Obligation, PBO) 등이 있으며, 예측급여 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PUC) 등에 의해 연금부채를 산정하고 있다.
- 8) PBO는 장래의 임금상승을 반영한 퇴직 시점의 급여를 기초로 전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장래 급여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고 그것을 기간 배분하여 과거의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구한 연금부채액을 의미하며, PUC는 예측급여채무를 산출하기 위한 방식을 의미한다.

〈표 1〉 연금부채 평가 비교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연금부채 평가	PBO (PUC)	PBO (최소부채인식시에 ABO 적용)	PBO	ABO

K-IFRS(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에서는 PBO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퇴직급여부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현행 기업회계기준 제27조)에서는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하여 퇴직연금채무를 측정하므로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단기 종업원 급여 채무 인식

IAS에서는 종업원 급여를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년 미만 단기 종업원 급여는 할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하여 부채(미지급비용)를 인식한다. 이 경우 1년 미만 단기 종업원 급여에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유급연차 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 유급 휴가,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비화폐성 급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표 2〉 단기 종업원 급여 채무 인식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퇴직연금 채무 인식	연금채무 인식	IAS 준용	인식	미인식

K-IFRS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퇴직급여 채무를 인식하는 반면, K-GAAP에서는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1년 미만 근속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 의해 퇴직급여 수급권이 존재하지 않아 채무를 미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보험수리적 가정

부채할인을 적용의 경우, IAS에서는 ‘연금지급의무와 상응한 유동성과 조건에 부합하는 신용등급(AA 이상)이 높은 회사채(high-quality corporate bond)’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SFAS에서는 현재가치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보험계리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30년 재무성 채권의 4년 평균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3〉 연금부채 평가 할인율(I)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계속기준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회사채	- 보험계리사 결정 · 30년 재무성채권 4년 평균이율	- 회사채 시장수익률 - 특수한 경우: 국공채 시장수익률 적용	일정한 기준 없음

IAS 및 SFAS의 연금부채 평가 할인율과 달리, 독일·네덜란드·일본 등의 평가 할인율 기준은 〈표 4〉에서 보듯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즉, 영국은 IAS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독일은 3.5% 고정, 네덜란드는 AA-Swap, 일본은 20년 국채를 기준으로 부채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연금부채 평가 할인율(Ⅱ)

기준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할인율	우량 회사채	3.5%	AA- Swap	20년 국채

자료: OECD, Protectng Pensions: Policy Analysis and Examples from OECD Countries, 2007.

K-IFRS에서는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채의 거래가 적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⁹⁾.

임금 및 급여 추정의 경우, IAS 및 영국은 미래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부채를 추정하고 있지만, SFAS는 미래의 임금상승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표 5〉 임금 및 급여의 추정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임금 상승률	고려	미고려	IAS 준용	미고려

K-IFRS에서는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에 대한 추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래의 임금상승은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및 그 밖의 관련

9)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 시기, 예상 금액과 지급 통화를 반영하는 단일의 가중 평균할 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할인율에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 시기를 반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지급 시기가 빠른 급여액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지급 시기가 늦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수익률 곡선 상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예상 지급 시기까지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성 있는 요소(예: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를 고려하여 추정하며 또한 퇴직급여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라 기업이 향후 회계기간에 퇴직급여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급여채무 측정 시 이러한 변경 내용을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⁰⁾.

4. 보험수리적 손익

IFRS 및 SFAS에서는 변동 규모를 연금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급여 반영 급부채무 중에서 큰 쪽의 10% 범위까지는 줄이도록 하는 상각 방법, 즉 범위 외 상각 또는 범위초과분 상각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SFAS에서는 손익이 발생한 기간 직후부터 손익의 일정 부분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IAS에서는 손익의 상각은 손익이 측정된 연도부터 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K-IFRS에서는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직전 보고기간 말 현재 인식되지 않은 보험수리적 손익의 순누계액이 (1) 직전 보고기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2) 직전 보고기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수리적 손익의 일부를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표 6〉 보험수리적 손익 인식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인식방법	범위초과분상각		범위한계법 (즉시인식 가능)	미적용
	손익이 측정된 연도부터 상각	손익이 발생한 기간 직후부터 손익 일정부분 상각		

10) 참고로 영국·독일·네덜란드·일본 등의 연금부채 추정 시의 임금상승 적용 여부를 보면 영국은 임금상승률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독일·일본에서는 고려치 않으며, 네덜란드는 암묵적으로 만 고려한다(OECD, 2007 참조).

또한 기업이 보험수리적 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즉시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은 (1) 모든 확정급여제도와 (2) 모든 보험수리적 손익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수리적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5. 적립자산의 측정 기준

SFAS는 연금자산을 공정가치와 시장가치(market related value)에 의해서 평가하게 된다. 다만 연금자산의 시장가치는 공정가액일 수도 있고, 5년 평균 시장가치법과 같이 5년 이내 기간 동안의 공정가액의 변화를 인식하는 계산가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IFRS에서는 사외적립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K-GAAP에서는 퇴직보험예치금이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측정기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7〉 적립자산의 측정 기준과 회계 처리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적립자산 측정	현금흐름 할인과 시가법적용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 적용	공정가치	규정 부재

또한 K-IFRS에서는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이 퇴직급여원가에서 차감되지만, K-GAAP에서는 퇴직보험예치금이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은 별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6. 과거근무원가 인식

IAS에서는 연금제도의 수정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 근로자들의 예상 잔여 근무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일한 상각 방법을 강제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반해 SFAS에서는 연금제도를 수정 또는 도입한 해에 과거근무원가 전액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금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근로자들의 미래 잔여 근무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8〉 과거근무원가 인식

	IFRS(IAS)	SFAS	우리나라	
			K-IFRS	K-GAAP
인식방법	다양한 상각 방법 인정	근무년수 상각법 (미래의 잔여 근무기간에 걸쳐 비용인식)	정액법에 의해 비용인식	미규정

K-IFRS에서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DB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된다면 해당 과거 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회계기준 및 규정을 국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은 대부분 국제회계기준(IAS)을 준용하지만 연금부채 평가 할인율 적용 시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국공채 시장수익률을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 인식을 정액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기준 및 규정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금부채 할인율은 보험계리사의 자율적인 결정 하에 30

년 재무성 채권 이율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립자산의 측정도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 적용을 허용하는 등 국제회계기준 보다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의 경우는 대체로 일시금 기준에 입각한 퇴직연금 관련 규정이어서 연금부채의 변동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연금회계 관련 기준 및 규정이 보완되고, 적용 시의 영향 분석을 통해 퇴직연금 운용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Ⅲ.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 분석¹¹⁾

1. 분석을 위한 제반 가정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연금부채를 추정하기 위해 가입연령은 25세, 평가 시점은 40세, 수급연령은 55세로 가정하고 부채평가방식은 예측급여방식(PBO)을 적용하였다. 또한 급여방식으로는 근퇴법 상의 기준 방식과 외국의 평균 임금비례 방식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른 연금부채평가를 <표 9>에서와 같이 시나리오 I 과 시나리오 II 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11)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근퇴법의 기준과 일본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균임금비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수리적 가정 하에 연금부채의 변동성 등은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보고자 하였다

〈표 9〉 연금부채 평가를 위한 가정

구분	제반 가정	
	시나리오 I (현행체계)	시나리오 II (외국기준)
가입연령	25세	
평가시점	40세	
수급연령	55세	
재정방식	PUC방식	
부채평가방식	PBO방식	
급여방식 (급여액산정방식)	- 근퇴법 기준 · 평균임금 $\times \frac{1}{12} \times$ 근속년수 (평균임금 4,000만원)	- 평균임금비례 방식 · 연금액(연) = 평균임금 $\times 0.015 \times$ 근속년수 (평균임금 4,000만원)
급여기간	-	퇴직 후 10년간
할인율	고할인율	5%
	중할인율	4%
	저할인율	3%
승급률(임금상승률)	5%	
탈퇴율, 사망율	미적용	
재정평가	1년	

이 경우 탈퇴율과 사망률은 적용하지 않은 반면, 할인율¹²⁾은 4%±1%로 구분하여 임금상승률(승급률)과 대비하여 연금부채의 산정 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의 재정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기 때문에 부채구조에 따른 자

12) 분석에서 사용된 할인율 4%는 부채의 변동성을 보기 위해 2008년 12월 현재 CD금리 수준이 4%대 수준임을 감안하여 임의로 설정한 값이며, 2009년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부터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연금부채가 산정되므로 현시점에서 K-IFRS에 따른 할인율 적용 사례를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산 구조의 변경은 매년 가능(부채 및 자산듀레이션은 1년으로 가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9〉와 같은 가정의 설정은 ①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적용하는 급여 방식에 각각 PBO 방식에 기초하여 할인율 및 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직접적으로 상호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② 기존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비해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예측급여채무액의 변동폭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③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연금부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할인율 및 임금상승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2. 분석 방법 및 결과

분석 방법은 보험수리적 모델을 적용하여 시나리오 I에서는 퇴직 시 최종(평균) 임금, 정상 퇴직일시금, 기발생표준부채 순으로, 시나리오 II의 경우는 퇴직 시 최종(평균)임금, 연금급여액 산정, 퇴직 시 장래급여총액(현재가치)산정, 장래급여총액(현재가치) 순으로 PBO 방식에 의한 연금부채 변화를 임금상승률과 할인율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 하에 예측급여부채를 시나리오에 따라 추정한 결과는 〈표 10〉 ~ 〈표 12〉와 같다.

〈표 10〉 시나리오 I 에 의한 PBO 산정 결과

임금상승률	할인율	연금부채 및 변동폭	
		연금부채(만원)	변동폭(저-중)
고(5%)	저(3%)	6,347	1,591
	중(4%)	5,494	
	고(5%)	4,756	
중(4%)	저(3%)	5,552	1,395
	중(4%)	4,999	
	고(5%)	4,157	
저(3%)	저(3%)	4,849	1,216
	중(4%)	4,197	
	고(5%)	3,633	

먼저 시나리오 I 에 의한 분석 결과는 〈표 10〉에서 보듯 임금상승률이 5%이고 할인율이 4%인 경우 예측급여채무액 규모는 5,4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할인율을 1%p 인하하여 3%로 설정하는 경우, 예측급여채무액 규모는 6,347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할인율 1%p 인하에 따른 연금채무는 대략 853만원으로 15.5%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할인율 변화에 따른 연금부채의 변동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임금상승률은 5%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할인율을 4%에서 5%로 1%p 인상하는 경우, 예측급여채무액 규모는 4,756만원으로 1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금상승률을 5%로 가정하는 경우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예측급여채무액 변동액은 1,591만원, 임금상승률을 4%로 1%p 인하시키는 경우의 변동액은 1,395만원, 임금상승률을 3%로 2%p 인하시키는 경우의 변동액은 1,216만원으로 추정되어, 임금상승률이 하락할수록 동일한 할인율 변화에 따른 예측급여채무액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낸다.

〈표 11〉 퇴직급여 추계액과 PBO 관계 분석 결과

할인율	임금상승률	퇴직급여추계액(A)	PBO(B)	(B)/(A)
4%	3%	4,999만원	4,197만원	83.9%
	4%		4,999만원	100.0%
	5%		5,494만원	109.9%

다음으로는 현행 퇴직급여추계액과 PBO 방식에 의한 연금채무(즉, 책임준비금)와 상호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 I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된다. 할인율이 4%로 일정하다고 가정한 가운데,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비한 예측급여채무액 비율은 임금상승률이 3%인 경우 83.9% 수준, 임금상승률이 5%인 경우는 109.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임금상승률 1%p 변화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예측급여채무의 비율은 10% 내외로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할인율보다 임금상승률이 큰 경우, 예측급여채무가 퇴직급여추계액보다 크게 나타난다.

〈표 12〉 시나리오 II에 의한 PBO 산정 결과

임금상승률	할인율	연금부채 및 변동폭	
		연금부채(만원)	변동폭(저-고)
고(5%)	저(3%)	5,408	1,981
	중(4%)	4,274	
	고(5%)	3,427	
중(4%)	저(3%)	4,732	1,734
	중(4%)	3,739	
	고(5%)	2,998	
저(3%)	저(3%)	4,131	1,514
	중(4%)	3,264	
	고(5%)	2,617	

다음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연금급여액 산정 방식 하에서 시나리오 II에 의해 예측급여채무액 규모를 산정한 결과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 I에 의해 분석한 결과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예측급여채무액규모의 변동폭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임금상승률을 5%로 가정하는 경우의 예측급여채무액 변동은 시나리오 I의 경우 1,591만원 반면 시나리오 II는 1,981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시나리오 II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시나리오 I에 의한 분석한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예측급여채무액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평균임금비례방식의 적용과 연금액 산정 방식 및 할인율 적용 기간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시나리오 II 방식에 의해 예측급여채무를 추정하는 경우, 할인율의 적용에 관한 기준이 철저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율 등 계산기초율의 변화와 보험수리적 가정의 설정 등에 따라 연금부채의 변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는 기업의 단기적 손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고려한 연금자산의 배분 전략과 운용이 연금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연금부채의 증가 등으로 연금자산의 운용 및 리스크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는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실 Turner and Hughes(2008)는 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추이가 가속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분석 상의 시사점

기존의 회계기준에서는 퇴직연금채무를 산정할 때 할인율, 임금인상률, 승급률 등과 같은 계산기초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계산기초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채무(퇴직급여추계액)가 거의 확정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할인율, 장

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급할 퇴직연금채무(예측급여채무)를 반드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할인율, 임금상승률 등과 같은 계산 기초율을 적용하여 퇴직연금채무를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할인율 및 임금상승률 등과 같은 계산기초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 계산기초율의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채무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기에, 할인율 및 임금상승률의 변동과 그 적용은 사용자의 퇴직연금채무 적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즉,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DB 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채무를 많이 적립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기존의 퇴직연금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적립 부담이 큰 반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낮은 퇴직연금채무를 적립하면 되므로 그만큼 적립 부담은 감소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일정한 할인율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등 회계조작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금부채가 단지 할인율뿐만 아니라 임금상승률, 퇴직률, 탈퇴율 등과 같은 계산기초율의 변화 및 보험수리적 가정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기초율의 적용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에서 보다 계산기초율 적용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더불어 계산기초율의 적용과 관련된 법인세법, 근퇴법 등과 같은 법 개정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사용자의 퇴직연금상품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일부 기업은 잠재적 연금부채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할인율의 하락 등으로 인해 매년 퇴직급여채무가 증가하여 각 기업은 심각한 적립 부족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 미국의 예에서 보듯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 일부 기업은 퇴직급여채무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DC형 제도로의 전환 또는 신규 가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증대한다(Turner and Hughes, 2008). 즉, 사용자는 현행과 같이 단순히 DB형, DC형, IRA형 퇴직연금상품보다 이들의

특성을 적절히 조합한 상품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Cash Balance Plan¹³⁾처럼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성격을 혼합함으로써 연금부채의 변동성을 감소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이브리드(hybrid) 상품의 도입 등 연금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개선 과제

1. 총량규제 중심의 건전성 규제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현재 선량한 관리자 의무에 입각한 질적 규제(자율규제)보다 연금운용의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양적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규제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운용 상품 선택폭을 제한하고 투자수익률의 저하 등을 초래하여 금융시장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퇴직연금감독규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자산운용규제가 일부 완화된 바 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주식, 부동산,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에는 근로자의 투자 지식 부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13) Cash Balance Plan은 장래 예측에 의한 형태가 아니라 매년 각출한 보험료를 보증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DC 형태를 띤 DB형 제도이며 PBO 부담의 변동을 줄일 수 있어 연금회계 대응 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 13〉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규제 비교

국가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한국	DB	30%	50%	제한 없음 (BBB-이상)	주식형·혼합형:50% 채권형: 제한없음	투자금지
	DC	투자금지	투자금지	제한 없음 (BBB-이상)	주식형: 투자금지 혼합형: 투자금지 채권형: 제한없음	투자금지
미국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원칙(단, DB는 기업주 투자 10% 이내)					
호주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원칙(단, 기업주 자산 5% 이내)					
덴마크	40%	40%	제한 없음	40%	제한 없음	
캐나다	30%	25%	제한 없음	30%	제한 없음	
독일	상장: 30% 비상장: 10%	25%	50%	50%	50%	
일본	법령상 제한 없음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금부채의 평가 등으로 종래의 자산리스크 중심에서 잉여금리스크 중심으로 퇴직연금의 재정운영 목표가 이행되어 가는 경우, 기존의 비율 방식의 퇴직연금 운용규제에서 총량규제 중심 자산운용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총량규제 방식 하에서는 적립비율의 설정과 이를 기준으로 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가 요구된다. 즉, 적립비율의 상한과 하한선을 설정하여 하한선보다 적립비율이 낮을 경우 부담금의 수준을 높이고 상한선보다 적립비율이 높을 경우 부담금 수준을 낮추거나 사용자에게 환수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4〉 적립비율에 따른 재무건전성 규제

적립형태	사전적 건전성 규제 (리스크 중심 감독)	사후적 건전성 규제 (Solvency 규제)
초과적립 (적립비율 > 100%)	▼ (적립비율 ↓)	부담금 수준 인하, 사용자 환수조치 등
적정적립 (적립비율 = 100%)	ALM적 자산운용	상시적 건전성 규제
과소적립 (적립비율 < 100%)	▲ (적립비율 ↑)	사용자 추가부담, 연금감액, 사업이전 등

주: 적립비율은 자산(적립금의 현재가치)/부채(책임준비금)의 현재가치

2. 연금 리스크 감독 규정의 정비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는 경우 사전적 리스크 감독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역할과 기능은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무리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총량규제 중심의 재무건전성 규제로 이행한다고 하여도 사전적 리스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여 사용자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감독규정에는 리스크 관련 감독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산과 부채를 연계한 ALM적 자산운용전략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 부채구조에 기초한 자산배분전략을 적극 추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도모하여 나아가는 리스크 감독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산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적립비율에 입각한 재무건전성 규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ALM적 자산운용 전략의 추구를 적극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명시적인 지급보장 장치는 없으나, 최소한

105% 이상의 적립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립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7년 1월에 도입된 새로운 규제 체계에서는 2010년부터 확률적 기법이 수반된 ALM적 자산운용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역시 DB형 제도인 'Pensionskassen'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ALM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자산항목별 투자수익률에 따른 사용자와 연금금, 수급자 및 가입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적립비율의 변동성을 감안한 연금자산의 배분 규제가 퇴직연금의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리스크 중심 감독) 차원에서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령의 개정 등을 통한 연금 ALM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

근퇴법 개정안¹⁴⁾에 따르면 사용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사업연도말 기준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즉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규정¹⁵⁾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검증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립 부족에 대한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따라서 근퇴법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채무의 적립, 재정 건전성 검증, 적립 과부족에 대한 처리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다만 근퇴법 개정안에 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 조치 및 연금재정 검증 주체라 할 수 있는 연금계리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14) 노동부는 2008년 8월말 근퇴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08년 12월초 정기국회에 근퇴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5) 근퇴법 개정안 제15조.

감독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금계리사 등에 의한 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및 확인 관련 규정 마련과 퇴직연금사업자의 통지 의무 위반 시의 제재 수준을 규정한 감독 기준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체불에 대하여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는 있지만¹⁶⁾ 충실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우선변제기간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근무 채무의 상각 기간, 보험수리적 가정 등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련 약관 인가 시 기초 서류에 명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기준으로는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근퇴법에는 퇴직연금부채(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채무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준비금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감독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사용자의 손익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적절한 보험수리적 방법 및 가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독 시스템이 특히 필요해진다¹⁷⁾.

4. 연금부채의 산출 기준 적용

근퇴법 등 퇴직연금 관련 법규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의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산정하기 위해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평가 방식과 과거법에 의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속기준과 비계속기준에 입각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하

16) 근퇴법 개정안 제11조.

17)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는 영국의 예에서 잘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바클레이은행의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기존 보험수리적 방식 하에서는 9억 파운드의 흑자를 보였지만 FRS 17을 적용함에 따라 25억 파운드의 적자로 반전하였다(이봉주, 2007, p.96).

고 이를 통해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평가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의 속성 상 사망률, 퇴직율,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다양한 통계 지표에 대한 가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서” 별지에 속하는 연금계리기준서에서는 부담금 산출이율을 ‘기준이율¹⁸⁾ ±1%’로 정하고 있다. 또한 3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경험임금인상률 산출·적용이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는 경험 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계약단체 별 경험승급률 및 경험임금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승급률과 임금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⁹⁾. 특히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서’ 별지에 속하는 연금계리기준서에서 연금규약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식으로서 예측급여방식 또는 특정연령방식(assumed entry age normal method)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 미국 및 일본 등에서 경험한 퇴직연금 부실화 원인은 금리 급락에 따른 연금부채 급증에 있으므로 보수적인 할인을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사망률은 가입자 규모 추계를 위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성별·연령별로 산정되며, 가입자와 연금수급자의 사망률에 차이가 있기에 각각에 대해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²¹⁾.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DB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 시점 이후의 연금 지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향후 온전한 형태의 퇴직연금으로 발전할 경우 가입자와 수급자간 예정사망률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일반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감독 목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확

18) 기준이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증권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 수익률과 3년 만기 회사채의 36개월 평균 수익률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19) 이와 같은 현행 계산기초율 사항은 노동부 규약 심사를 위해 노동부 내부 문건으로 제시한 기준일 뿐, 부담금을 어떠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적용·산출하여야 한다는 정형화된 기준은 아니다.

20) 다만 책임준비금의 평가(부담금 평가방식)로 예측급여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산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연금제세의 인정 범위 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어 선언적 의미의 책임준비금 평가에 그치고 있다.

21) 류건식(2007), p.77.

보하기 위한 최소 적립금, 세제 측면의 최대 적립금 등은 산출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향후 할인율을 포함한 계산기초율이 부담금 산출, 최소 적립금 산출, 최대 적립금 산출 시 산출 목적에 맞게 달리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능한 부담금 산출 시에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²²⁾, 최소 적립금 산출 시에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적인 기초율이 사용되도록 관련 규정의 제정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담금 산출이율과 연금부채 평가이율이 동일한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어 연금부채 평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DB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을 장기간에 걸쳐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입장에서 부채 평가에 사용하는 이자율이 별도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재무 상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원칙에 의해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할인율 적용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퇴직연금회계 관련 규정과의 역할 정립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²³⁾에 따르면 보험수리적 가정을 인구통계적 가정(사망률, 탈퇴율 등)과 재무적 가정(할인율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수리적 가정의 설정은 낙관적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금 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 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입각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보험수리적 가정 및 손익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근퇴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이 연금채무

22)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연금계리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23) 한국회계기준원(2007), pp.48-52.

(책임준비금) 평가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첫째,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설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사용자의 판단 여하에 따라 보험수리적 손익의 변동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산기초율의 설정 기준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퇴법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입각한 보험수리적 손익 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설치되고 또한 연금계리적 측면에서 보험수리적 손익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현재 근퇴법은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에 입각하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및 평가를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기초한 법인세법의 개정 및 보완 등이 이루어져 연금부채 및 적립 과부족의 처리가 법인세법 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부담금 납입에 대한 손비처리 문제, 적립 과부족 시의 회계처리 문제 등과 관련된 규정 작업 또한 요구된다. 이는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인세법상 연금채무에 관련된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 국세청 간 협의에 의한 역할 관계를 보다 명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법인세법 및 근퇴법 상에 퇴직연금 부채 관련 규정(법령의 보완 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우리나라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에 준하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부채의 규모 및 변동성 증대로 인해 연금부채의 계산기초율, 퇴직연금 상품의 선택, 연금리스크의 관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총량규제 중심의 건전성 규제로의 전

환, 연금 ALM적 감독 규정의 정비, 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 연금부채의 산출 기준 적용, 퇴직연금회계 관련 규정과의 역할 정립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재무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는 비율규제가 아닌 총량규제 중심의 재무건전성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립비율의 설정과 이를 기준으로 한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가 요구된다. 즉 적립비율의 상한과 하한선을 설정하여 하한선보다 적립비율이 낮을 경우 부담금의 수준을 높이고 상한선보다 적립비율이 높을 경우 부담금 수준을 낮추거나 사용자에게 환수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리스크 감독 측면에서 감독당국은 퇴직연금 운용 시 ALM적 자산운용전략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 부채구조에 기초한 자산배분전략을 적극 추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도모하여 나아가는 리스크 감독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준비금 적정성 감독 기준 측면에서는 연금계리사 등에 의한 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및 확인 관련 규정 마련과 퇴직연금사업자의 통지의무 위반 시의 제재 수준을 규정한 감독 기준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우선변제기간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의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근퇴법에 퇴직연금부채(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위 등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준비금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감독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금부채 산출 기준 측면에서는 향후 할인율을 포함한 계산기초율이 부담금 산출, 최소적립금 산출, 최대적립금 산출 시 산출 목적에 맞게 달리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담금 산출 시에는 재량을 가능한 부여하되, 최소 적립금 산출 시에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적인 기초율이 사용되도록 관련 규정의 제정이 요구된다. 즉, DB형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을 장기간에 걸쳐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입장에서 부채 평가에 사용하는 이자율이 별도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분식회계 방지 차원에서 일관성 원칙에 의해 보

다 엄격한 기준 하에 할인을 적용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회계 관련 규정과의 역할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설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근퇴법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입각한 보험수리적 손익 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설치되고, 연금계리적 관점에서 보험수리적 손익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기초한 법인세법의 개정 및 보완 등이 이루어져 연금부채 및 적립 과부족의 처리가 법인세법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부, 국세청 간 협의에 의한 역할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권승화, 『국제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 비교해설』, Ernst & Young 한영, 2007.10.
- 김해식,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연구조사자료, 1999.6.
- 류건식, 「우리나라 기업연금 회계제도의 도입과제」, 『보험학회지』, 제53집, 1999, pp.227~258.
- _____,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규제방안: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7.12.
- 류건식 · 이경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2008.3.
- 박규서, 『퇴직연금제도 회계 및 세제』, 노동부, 2006.11.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생·손보업계설명회」, 2007.10.
- 성주호, 『퇴직연금 손익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7.3.
- 이봉주, 『퇴직연금지급보증제도의 요율체계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7.3.
- Amir, E., Guan, Y. and Oswald, D., “The Effect of Pension Accounting on Corporate Pension Asset Allo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UK and US”, Discussion Paper, City University, Pensions Institute, December 2007.
- ASB, FRS 17, *Retirement Benefits*, London: The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00.
- ASB, Amendment to FRS 17, *Retirement Benefits*, 2008.3.
- Baker, A.J., Logue, D.E. and Rader J.S., *Managing Pension and Retirement Plans*,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Blome S., Franzen, D., Scheuenstuhl G., and Yermo J., “Pension Fund 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Results from an ALM Optimisation Exercise”, *Protecting Pensions: Policy Analysis and Examples from OECD Countries*, No. 8, OECD, 2007.
- Geoffrey W., *Accounting Standards for Pension Cost, Pension and Retirement Incom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Goebel, C. E. and Kivarkis P.M., “The Evolution of Pension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Benefits Quarterly* 23, fourth quarter 2007.

IASB, Amendment to IAS 19, *Employee Benefits-Actuarial Gain and Losses, Group Plans and Disclosures(Dec.)*, Londo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2004.

IASC, IAS 19, *Retirement Benefits*, Londo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2004.

OECD, *Protecting Pensions: Policy Analysis and Examples from OECD Countries*, Private Pension Series, 2007.

Turner J.A. and Hughes G., “Large Declines in Defined Benefit Plan Are Not Inevitable: The Experience of Canada, Ire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City University, Pensions Institute, 2008.4.

Yermo J., “Reforming the Valuation and Funding of Pension Promises: Are Occupational Pensions Safer?”, *Protecting Pensions: Policy Analysis and Examples from OECD Countries*, No. 8, OECD, 2007.

Abstract

In this study, we compare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accounting standards governing retirement pension which ar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K-GAAP),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an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FAS). Then we attempt to investigate the probable effect of K-IFRS on pension plans based on the scenario analysis and suggest policy measures. According to our results, because of the increased volatility of pension liability,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pension plans will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choice of pension products, assumptions of pension liability, and risk management for pension plans.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for financial authority to take several measures for improvement. Among other things, regulators need to execute risk supervision policies leading to pension asset allocation based on liability structure to secure the financial soundness of pension plan scheme. In terms of supervision on the reserve adequacy, it is proposed that pension actuaries examine the adequacy of pension reserve. In particular, detailed regulation is required to ensure the objectivity in making actuarial assumptions.

※ Key Words: IAS, K-GAAP, K-IFRS, Retirement Pension, Retirement Pension Accounting Standard

